

영등포구의회
제146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7. 2.



社會建設委員會

(專門委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6. 23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,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도록 하되,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에 구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)의 심의를 포함함(안 제8조제1항)
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개의요건과 의결정족수 충족요건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위원 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(안 제8조제4항)

■ 관련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 및 제12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없음.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경상남도 창녕군 행사장에서 발생한 화왕산 산불 등 최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,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에서 “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추진 협조공문”(서울특별시 방재기획과-5788)이 시달되어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7. 2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령

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11조 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소속하에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 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 (지역위원회의 기능)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

1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4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5.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